(부산해양경찰서)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

[시행 2021. 9. 29.] [부산해양경찰서고시 제2021-37호, 2021. 9. 29., 폐지제정]

부산해양경찰서(해양안전과), 051-664-2251

- □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대상
- 1. 구역
- 가.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동 송정해수욕장 레저활동 금지구역
- · 해안선으로부터 100M 이내 해상 동력 수상레저활동 접근 금지 ⇒ 라피어 해운대 다리전망대 끝단부터 송정해변로 11-14까지 해안선으로부터 100M
- · 구덕포 방향 수상레저금지구역 끝 10M 구간 안전구역(Safety Zone)
- 나.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해운대해수욕장 레저활동 금지구역
- · 해안선으로부터 $100\mathrm{M}$ 이내 해상 동력 수상레저활동 접근 금지 \Rightarrow 부산 웨스틴 조선호텔부터 팔레드시즈까지 해안선으로부터 $100\mathrm{M}$
- · 팔레드시즈 방향 수상레저금지구역 끝 20M 구간은 안전구역(Safety Zone)
- 다.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동 광안리해수욕장 레저활동 금지구역
- · 해안선 바깥쪽 방향 150M이내 해상 동력 수상레저활동 접근 금지 \Rightarrow 언양불고기삼거리 좌측 끝지점부터 할리스커피까지 해안 선으로부터 150M
- · 수상레저기구 진출입로는 해양레포츠센터에서 언양불고기 삼거리 좌측 끝지점(가로) 직선에서 해안선 바깥쪽 방향 150M 해상(세로)
- 라. 해수욕장별 금지구역 지정 내용(도면참조)
- 2. 기간: 연 중
- 3. 대 상 : 동력수상레저기구
- 재검토 기한 :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훈령 제334호)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도 10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9월 30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부칙 <제2021-37호, 2021, 9, 29. >

- 1.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2.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『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』고시(부산해양경찰서 제2020-22호)는 폐지한다.

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

○ 수상레저활동 금지 구역











